

[서식 예]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(노동위원회 화해조서로 집합건물)

부동산강제경매신청

채권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겸 소유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청구채권의 표시

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집행권원의 표시

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○○지방노동위원회 20○○부해○○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음

신 청 취 지

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,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

신 청 원 인

- 1. 채권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○○지방노동위원회 20○○부해○○ 부당해고 고구제사건에서 '채무자가 채권자의 채용을 거부하고 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, 채권자를 다시 채용하기로 한다.' '채무자는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 금 까지의 기본금 OOO원을 지급하고,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 위 각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XX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라'라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.
- 2. 이에 채무자는 20〇〇. 〇〇. 〇〇. 채권자와 화해하여 '채무자는 채권자를 복 직하고, 지금까지의 기본급을 지급한다는.'는 조항을 화해조서에 기재하였고, 이 는 확정되었습니다.
- 3.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위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부

1.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	1부
1. 송달증명원	1부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	각 1부
1. 부동산목록	1부
1. 이해관계인목록	2부
1.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·시군구청통보	용),
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보관용)	각 1부
1. 법원보관금영수증	1부

1. 송달료납부서



2000. 0. 0.

위 채권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

[별 지]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00시 00구 000-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 1층 00.00㎡ 2층 00.00㎡ 3층 00.00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00.00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00시 00구 000-000 000-000 대 000.0 m²

대지권의 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1. 대지권 00000.00분의 0000.00

끝.



[별 지]

이해관계인의 표시

번 호	구 분	성 명	주 소
채권자 겸		00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1	가압류권자	01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		02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2	채무자 겸 소유자	$\Diamond \Diamond \Diamond \Diamond$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3	근저당권자	◈◈은행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4	근저당권자	주식회사 ■ ■ 상호저축은행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

제출법원	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 행법 제79조제1항, 제 268조) 민사집행법 제80조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		
불복절차 및 기간	(신청인) · 신청기각·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)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 (이해관계인) ·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).				
비 용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□ 만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• 송달료: ○○○원(□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•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채권금액의 1,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(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)}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(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)납부 • 감정료, 신문공고료, 부동산현황조사료,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.				
기 타	 가 암. ·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(대법원 1983. 10. 15.자 83마393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,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(대법원 1968. 6. 3.자 68마378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. 				